



제 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관리 업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035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관리 업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	3
※ 참고자료	10
1.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현황	10
2. 경기단체 회장 선출 관련 대한체육회 정관·규정	11
3. 2024~2026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선거 현황	12
4.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 관리현황	13
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	2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6. 7. 20.
3. 회 부 일: 2026. 7.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의 회장과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그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기단체(이하 “회원종목단체”라 한다)의 회장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의 선수 등록, 경기 운영, 심판·지도자 관리, 국가대표 선발 및 국제대회 참가 등 종목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단체임. 또한 상당수 회원종목단체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등 그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확대되고 있으며,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제도 등 체육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그럼에도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는 단체별 자체 선거관리기구와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선거관리의 독립성·전문성·통일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해

당 종목의 운영 방향과 체육인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선출 절차 역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

이에 회원종목단체 회장도 법률상 투표 선출 원칙을 명확히 하고, 그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및 체육단체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관리 업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대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기단체의 회장을 투표로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한체육회가 선거 실시에 필요한 지원 또는 선거 위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3조의4(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위탁관리) ①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로서 대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이하 “회원종목단체”라 한다)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② 회원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의 위탁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선거 시기, 위탁선거의 수, 선거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위원회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와 관할위원회의 지정·조정 등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⑤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회원종목단체의 정관 및 선거 관련 규정 정비,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법은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지방체육회의 회장 선출 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원종목단체¹⁾의 회장 선출 선거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1)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기단체를 의미하며,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현재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선출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의무위탁 근거가 없어 실제 선거는 내부 자체 선거로 실시되고 있으며²⁾, 이로 인하여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의 불투명성, 선거인단 추첨의 불공정성 등 관리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대한체육회가 선거 위탁·실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회장선거 위탁 관련 법률 및 규정]

구분	법률 또는 규정
대한체육회 · 지방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대한체육회) ⑦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u>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u> 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⑦ 지방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u>시·도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u>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⑧ 장애인체육회는 제7항 단서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u>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u>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회원종목단체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회원종목단체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u>중립적인 인사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u>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의미함. ([참고자료 1]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현황)

2) 2024~2026 기준 자체선거 74건 중 위탁선거 0건, ([참고자료 3] 2024~2026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선거 현황)

개정안에 따를 경우 외부의 독립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장 선거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³⁾에 따라 선거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2026년 8월 기준 71개 회원종목단체(정회원·준회원) 중 45개가 정부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의 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⁴⁾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선거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개정안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1개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위탁선거법」 제14조제3항⁵⁾에

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다.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단체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위탁선거에 적용한다.

1. 의무위탁선거: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

제7조(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관할위원회가 관리하는 위탁선거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다만,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2. 선거참여·투표절차, 그 밖에 위탁선거의 홍보에 관한 사무

3. 위탁선거 위반행위[이 법 또는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해당 정관등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4)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4조(선거일) ③ 관할위원회는 그 관할구역에서 공직선거등이 실시되는 때에는 해당 공직선거등의 선거일 또는 투표일 전 30일부터 선거일 또는 투표일 후 20일까지의 기간에 속한 날은 위탁선거의 선거일로 정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20일까지의 기간에 속한 날은 위탁선거의 선거일로 정할 수 없다.

따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 등 공직선거 전후 일정 기간 동안은 위탁선거 실시가 제한되는바 제한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일부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선거가 지연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 제33조의4제4항은 위탁관리 및 관할위원회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위탁선거법」이 일반법으로서 위탁선거 절차 전반을 규율하고 있고, 안 제33조의4제3항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위원회 지정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규칙 위임 조항의 필요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원종목단체의 공공성과 사회적 기능·역할을 고려할 때 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히 2025년부터 대한체육회에서는 체육계 혁신의 일환으로 대한축구협회를 비롯한 회원종목단체의 선거제도를 개편해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⁶⁾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위탁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입장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① 공직선거 관리환경이 복잡해지고 의무위탁 대상이 확대된 현 상황에서 선거를 추가 위탁받는 경우 선거관리

6) (기존) 소수 선거인단에게만 선거권 부여

(개편)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구성원 전체에게 선거권 부여

(예시: 대한축구협회) 개편을 통해 200명 규모*로 구성되었던 기존 회장선거인단 규모가 2만여 명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당연직 대의원·임원 및 무작위 추첨된 전문선수·지도자·심판 등

**전문선수·동호인·지도자 각 4,000~6,000명, 등록심판 3,000명, 기타 1,000명 등으로 구성

위원회의 관리상 한계를 벗어날 우려가 있고,

② 「위탁선거법」 제14조에 따라 공직선거등의 전후 일정 기간에는 위탁선거 실시가 제한되어 회원종목단체별로 적시에 선거를 실시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③ 의무위탁 시 「위탁선거법」에 따른 벌칙조항의 적용대상이 되어 회원종목단체의 특수성 및 자율성을 제약할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⁷⁾⁸⁾).

참고로, 제22대 국회에서 경기단체 회장 선거관리 업무의 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음.

[제22대 국회 선거관리 위탁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

발의의원 (의안번호)	주요내용	발의일	심사경과
김재원의원 (제2207802호)	○ 회원종목단체 회장은 투표로 선출하도록 명시 ○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25.1.24.	소위 계류 중
정준호의원 (제2220035호)	○ 경기단체 회장은 회원 전원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명시 ○ 경기단체 회장 선거 전자적 방법 실시 근거 마련 ○ 경기단체 회장 선거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	'26.7.13.	전체회의 미상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7) [참고자료 5] 「위탁선거법」 상 벌칙규정

8)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례를 고려하여 의무위탁대상 단체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법률에서 마련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② 조합은 제27조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선출하는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출하는 이사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자료 1]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현황(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회원종목단체(71개) - 정회원, 준회원 -

(‘26.8.4. 기준)

구분	No	단 체 명
정 회 원 (64)	1	대한가라테연맹
	2	대한검도회
	3	대한게이트볼협회
	4	대한골프협회
	5	대한국학기공협회
	6	대한궁도협회
	7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8	대한근대5종연맹
	9	대한민국농구협회
	10	대한당구연맹
	11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12	대한럭비협회
	13	대한레슬링협회
	14	대한롤러스포츠연맹
	15	대한루지경기연맹
	16	대한바둑협회
	17	대한바이애슬론연맹
	18	대한민국배구협회
	19	대한배드민턴협회
	20	대한보디빌딩협회
	21	대한복싱협회
	22	대한볼링협회
	23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24	대한빙상경기연맹
	25	대한사격연맹
	26	대한사이클연맹
	27	대한산악연맹
	28	대한세팍타크로협회
	29	대한정구협회
	30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31	대한수영연맹
	32	대한수중.핀수영협회
	33	대한스쿼시연맹
	34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구분	No	단 체 명
정 회 원 (64)	35	대한승마협회
	36	대한씨름협회
	37	대한아이스하키협회
	38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39	대한양궁협회
	40	대한에어로빅힙합협회
	41	대한역도연맹
	42	대한요트협회
	43	대한우슈협회
	44	대한유도회
	45	대한육상연맹
	46	대한조정협회
	47	대한민국족구협회
	48	대한주짓수회
	49	대한민국줄넘기협회
	50	대한철인3종협회
	51	대한체조협회
	52	대한축구협회
	53	대한카누연맹
	54	대한컬링연맹
	55	대한탁구협회
	56	대한태권도협회
	57	대한택견회
	58	대한테니스협회
	59	대한파크골프협회
	60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61	대한펜싱협회
	62	대한하키협회
	63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64	대한핸드볼협회
준 회 원 (7)	65	대한서핑협회
	66	대한요가회
	67	대한크라쉬연맹
	68	대한크리켓협회
	69	대한테크볼협회
	70	한국e스포츠협회
	71	대한MMA총협회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중 공식유관단체는 정회원단체 중 45개 단체임()

[참고자료 2] 경기단체 회장 선출 관련 대한체육회 정관·규정

「대한체육회 정관」(개정 2026. 7. 16.)

제7조(회원단체) ① 체육단체는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단체가 된다.

② 제1항의 회원단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종목단체**”는 회원단체 중 특정 종목의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13조의2(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 ① 체육회는 올림픽헌장 및 국제경기연맹의 규정을 존중하여 회원종목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관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는 시·도종목단체로 조직하며, 필요에 따라 전국규모연맹체를 둘 수 있다.

③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은 해당 단체의 정관에 따른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④ 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회원종목단체 규정」(개정 2026. 8. 26.)

제19조(회장 선출기구)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 회장 선출을 하고자 하는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선거인으로 구성하되, 동일인이 둘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명의 선거인으로 본다. 다만,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6. 8. 26.>

1.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대의원

2.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종목단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 및 대의원

3. 체육회가 구축·운영하는 경기인등록시스템에 해당 종목의 경기인으로 등록된 사람(단, 선거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회원종목단체의 자체전산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경기인 포함 가능)

④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출기구의 규모 및 인적 구성은 제3항에 따르고, 그밖에 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하되, 해당 회원종목단체는 종목 특성, 등록인원,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6.>

[참고자료 3] 2024~2026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선거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단위: 회)

구분	정기(임기만료) 자체선거	정기(임기만료) 위탁선거	재·보궐 자체선거	재·보궐 위탁선거	계
계	64	0	10	0	74
정회원 (총 64개)	63	0	9	0	72
2026년	1	-	5	-	6
2025년	44	-	4	-	48
2024년	18	-	-	-	18
준회원 (총 2개*)	1	0	1	0	2
2026년	-	-	1	-	1
2025년	-	-	-	-	-
2024년	1	-	-	-	1

* 한시적 준회원 단체(서핑, 크라쉬, 크리켓, 테크볼, MMA) 제외

[참고자료 4]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 관리현황

□ 2026년(26.9.1.기준): 58건

연번	구분	시도	구시군	선거명	선거일
1	중앙회장	중앙	중앙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	1. 7.(수)
2	이사장	서울	동작구	신대방새마을금고이사장보궐선거	1. 7.(수)
3	이사장	대구	달서구	성일새마을금고이사장보궐선거	1. 9.(금)
4	조합장	경기	화성시갑	서화성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1. 13.(화)
5	지방체육회장	서울	종로구	종로구체육회장보궐선거	1. 19.(월)
6	이사장	경기	용인시수지구	서용인새마을금고이사장보궐선거	1. 19.(월)
7	이사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1. 20.(화)
8	이사장	전북	임실군	임실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1. 21.(수)
9	이사장	서울	강남구	청담동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1. 21.(수)
10	이사장	광주	서구	염주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1. 22.(목)
11	이사장	대구	북구	북대구새마을금고이사장보궐선거	1. 23.(금)
12	이사장	경북	경산시	와촌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1. 28.(수)
13	이사장	경남	진주시	진주중앙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1. 28.(수)
14	이사장	경기	가평군	가평군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1. 28.(수)
15	이사장	대전	유성구	대전온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1. 28.(수)
16	이사장	경남	사천시	사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1. 28.(수)
17	이사장	경남	합천군	강양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1. 28.(수)
18	이사장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새마을금고이사장보궐선거	1. 29.(목)
19	이사장	경남	함안군	함안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1. 30.(금)
20	이사장	전남	여수시	새여수새마을금고이사장보궐선거	2. 3.(화)
21	이사장	경북	경주시	더존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2. 4.(수)
22	이사장	서울	성동구	무지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2. 4.(수)
23	이사장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2. 5.(목)
24	이사장	울산	중구	울산미래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2. 5.(목)
25	이사장	대전	중구	원대전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2. 6.(금)
26	이사장	대전	중구	태평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2. 6.(금)
27	이사장	서울	성북구	성북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2. 6.(금)
28	이사장	제주	제주시	아라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2. 7.(토)
29	이사장	제주	제주시	한솔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2. 7.(토)
30	이사장	부산	남구	대연6동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2. 10.(화)
31	이사장	부산	남구	남부중앙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2. 10.(화)
32	이사장	부산	남구	남부산새마을금고이사장보궐선거	2. 10.(화)
33	이사장	서울	마포구	마포공덕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2. 11.(수)
34	이사장	경기	연천군	전곡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2. 11.(수)
35	조합장	경북	예천군	예천축산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2. 11.(수)
36	이사장	전북	전주시완산구	서전주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2. 12.(목)
37	이사장	충남	천안시동남구	광덕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2. 25.(수)
38	지방체육회장	충북	음성군	음성군체육회장보궐선거	3. 5.(목)
39	조합장	경북	구미시	해평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3. 5.(목)
40	이사장	서울	노원구	노원새마을금고이사장보궐선거	3. 10.(화)
41	이사장	부산	북구	구포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3. 11.(수)

42	조합장	경기	화성시	송산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3. 11(수)
43	이사장	부산	금정구	금정새마을금고이사장보궐선거	3. 13(금)
44	이사장	경기	안양시	안양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3. 18(수)
45	조합장	경북	봉화군	물야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3. 18(수)
46	조합장	전북	김제시	동진강낙농축산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3. 25(수)
47	이사장	서울	관악구	신신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4. 3.(금)
48	대학의장	충북	청주시	제23대 충북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거	7. 10(금)
49	이사장	대구	달서구	성서새마을금고이사장보궐선거	7. 15(수)
50	이사장	전남	광양시	광양시새마을금고이사장보궐선거	7. 21(화)
51	이사장	부산	동구	초량새마을금고이사장보궐선거	7. 22(수)
52	이사장	서울	동작구	대방새마을금고이사장재선거	7. 22(수)
53	이사장	경기	성남시	성남수정새마을금고이사장보궐선거	8. 19(수)
54	이사장	울산	중구	중울산새마을금고이사장보궐선거	8. 27(목)
55	이사장	경남	창원시	벚엘새마을금고이사장보궐선거	9. 3.(목)
56	대학의장	부산	연제구	제9대 부산교육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재선거	9. 3.(목)
57	대학의장	대전	유성구	제10대 국립한밭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거	9. 9.(수)
58	대학의장	대전	유성구	제10대 국립목포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거	9. 18(금)

□ 2025년: 1,190건

연번	구분	시도	구시군	선거명	선거일
1	조합장	충북	충주시	충주축산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1. 3.(금)
2	지방체육회장	경북	고령군	고령군체육회장보궐선거	1. 9.(목)
3	대한체육회장	중앙	-	대한체육회장선거	1. 14.(화)
4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중앙	-	대한장애인체육회장선거	1. 16.(목)
5	조합장	경북	영덕군	북영덕농업협동조합장선거	1. 23.(목)
6	조합장	제주	서귀포시	성산일출봉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2. 4.(화)
7	조합장	전남	나주시	산포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2. 27.(목)
8~1108	동시이사장		전국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1,101건)	3. 5.(수)
1109	이사장	서울	서대문구	명지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3. 5.(수)
1110	조합장	강원	강릉시	강릉시수산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3. 5.(수)
1111	조합장	충남	논산시	연무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3. 21.(금)
1112	조합장	충남	천안시북구	천안배원예농업협동조합장재선거	3. 26.(수)
1113	지방체육회장	경기	이천시	이천시체육회장보궐선거	3. 27.(목)
1114	지방체육회장	서울	은평구	은평구체육회장보궐선거	3. 27.(목)
1115	조합장	경북	포항시북구	포항축산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4. 2.(수)
1116	이사장	대구	달성군	옥포새마을금고이사장재선거	4. 2.(수)
1117	조합장	광주	광산구	삼도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4. 9.(수)
1118	이사장	강원	속초시	설악새마을금고이사장재선거	4. 14.(월)
1119	조합장	광주	광산구	광주광역시축산업협동조합장재선거	4. 22.(화)
1120	조합장	서울	강동구	서울시산림조합장재선거	4. 23.(수)
1121	조합장	경북	성주군	수륜농업협동조합장재선거	4. 25.(금)
1122	조합장	전남	담양군	봉산농업협동조합장재선거	4. 25.(금)
1123	조합장	충남	보령시	보령축산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4. 30.(수)
1124	대학의장	서울	성북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0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6. 25.(수)
1125	이사장	서울	은평구	연신내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6. 25.(수)
1126	조합장	전남	장성군	장성농업협동조합장재선거	6. 27.(금)
1126	대학의장	경기	안성시	제9대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	6. 26.(목)
1127	조합장	전남	고흥군	녹동농업협동조합장재선거	6. 26.(목)
1128	조합장	전북	전주시진구	전주원예농업협동조합장재선거	6. 26.(목)
1129	조합장	전남	장성군	장성농업협동조합장재선거	6. 27.(금)
1130	조합장	전북	고창군	고창부안축산업협동조합장재선거	7. 1.(화)
1131	이사장	경북	김천시	알찬새마을금고이사장보궐선거	7. 2.(수)
1132	조합장	경기	고양시북구	일산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7. 4.(금)
1133	이사장	대전	대덕구	으뜸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7. 4.(금)
1134	지방체육회장	충북	진천군	진천군체육회장보궐선거	7. 8.(화)
1135	이사장	경남	진주시	망경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7. 9.(수)
1136	조합장	광주	광산구	광주비아농업협동조합장재선거	7. 9.(수)
1137	대학의장	부산	연제구	제9대 부산교육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7. 15.(화)
1138	조합장	경북	김천시	감문농업협동조합장재선거	7. 16.(화)
1139	대학의장	강원	춘천시	춘천교육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7. 23.(수)
1140	대학의장	경북	구미시	국립금오공과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7. 23.(수)
1141	이사장	경북	구미시	상모새마을금고이사장보궐선거	7. 23.(수)
1142	조합장	강원	고성군	토성농업협동조합장	7. 23.(수)
1143	조합장	경남	창녕군	우포농업협동조합장재선거	7. 23.(수)

1144	조합장	강원	인제군	인제축산업협동조합장	7. 23(수)
1145	이사장	강원	강릉시	명주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7. 28(월)
1146	조합장	경북	상주시	상주시산림조합	7. 30(수)
1147	조합장	경북	김천시	새김천농업협동조합장재선거	8. 6.(수)
1148	조합장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서창원농업협동조합장재선거	8. 7.(목)
1149	이사장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창진새마을금고이사장보궐선거	8. 7.(목)
1150	조합장	충남	서천군	서서천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8. 8.(금)
1151	대학의장	전남	목포시	제9대 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8. 12(화)
1152	조합장	전남	구례군	구례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8. 27(수)
1153	지방체육회장	인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체육회장재선거	8. 29(금)
1154	조합장	경남	창녕군	창녕축산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8. 29(금)
1155	조합장	전남	신안군	압해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9. 3.(수)
1156	이사장	경북	문경시	신문경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9. 4.(목)
1157	조합장	경북	구미시	무을농업협동조합장재선거	9. 10(수)
1158	지방체육회장	울산	동구	울산광역시동구체육회장보궐선거	9. 10(수)
1159	조합장	전남	담양군	담양축산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9. 12(금)
1160	국기원장	서울	강남구	국기원장선거	9. 19(금)
1161	조합장	충남	공주시	의당농업협동조합장재선거	9. 24(수)
1162	이사장	충북	음성군	대동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9. 24(수)
1163	이사장	경기	수원시영통구	동수원새마을금고이사장보궐선거	9. 25(목)
1164	조합장	대전	서구	기성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10. 24(금)
1165	조합장	전남	영광군	굴비굴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10. 31(금)
1166	이사장	부산	동래구	안락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11. 4.(화)
1167	이사장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주중앙새마을금고이사장보궐선거	11. 13(목)
1168	이사장	경북	포항시남구	영포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11. 19(수)
1169	대학의장	전북	전주시완산구	제9대 전주교육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11. 19(수)
1170	대학의장	서울	종로구	제9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11. 26(수)
1171	대학의장	제주	제주시	제12대 제주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11. 27(목)
1172	지방체육회장	서울	관악구	관악구체육회장보궐선거	12. 1.(월)
1173	대학의장	전북	군산시	제10대 국립군산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12. 3.(수)
1174	이사장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신기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12. 5.(금)
1175	이사장	인천	계양구	효성새마을금고이사장보궐선거	12. 10(수)
1176	조합장	경남	밀양시	무안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12. 10(수)
1177	이사장	충북	음성군	비석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12. 11(목)
1178	이사장	충북	충주시	연수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12. 17(수)
1179	중앙회장	중앙	중앙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	12. 17(수)
1180	이사장	전남	영암군	삼호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12. 18(목)
1181	이사장	서울	중랑구	서울동부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12. 18(목)
1182	이사장	충남	천안시동남구	중부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12. 23(화)
1183	이사장	강원	강릉시	송정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12. 23(화)
1184	이사장	경남	거창군	거창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12. 23(화)
1185	이사장	서울	종로구	명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12. 23(화)
1186	이사장	경북	구미시	형곡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12. 23(화)
1187	조합장	대구	달서구	성서농업협동조합장재선거	12. 23(화)
1188	이사장	경남	양산시	남양산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12. 24(수)
1189	이사장	전북	군산시	금강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12. 30(화)
1190	이사장	전북	군산시	남군산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12. 30(화)

□ 2024년: 39건

연번	구분	시도	구시군	선거명	선거일
1	지방체육회장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보궐선거	01. 25(목)
2	농협중앙회장	중앙	-	제25대 농협중앙회장선거	01. 25(목)
3	대학의장	부산	금정구	제22대 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02. 06(화)
4	대학의장	경남	진주시	제12대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02. 07(수)
5	대학의장	강원	춘천시	제13대 강원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02. 20(화)
6	조합장	충남	논산시	논산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05. 03(금)
7	조합장	경북	경산시	와촌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05. 03(금)
8	조합장	충남	서산시	부석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05. 08(수)
9	조합장	전남	순천시	전남낙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05. 09(목)
10	조합장	경북	경주시	경주농업협동조합장선거	05. 09(목)
11	조합장	경남	합천군	율곡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05. 09(목)
12	조합장	전남	여수시	여천농업협동조합장선거	05. 10(금)
13	조합장	부산	사상구	중부산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05. 22(수)
14	조합장	경남	남해군	남해축산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05. 24(금)
15	조합장	경기	용인시처인구	백암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06. 14(금)
16	지방체육회장	경남	거창군	거창군체육회장보궐선거	06. 14(금)
17	대학의장	대구	북구	제20대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06. 25(화)
18	대학의장	부산	남구	제8대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06. 26(수)
19	조합장	경남	합천군	가야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06. 28(금)
20	지방체육회장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체육회장보궐선거	07. 15(월)
21	조합장	경남	함양군	함양군산림조합장보궐선거	08. 01(목)
22	조합장	전남	순천시	순천시산림조합장보궐선거	08. 13(화)
23	지방체육회장	경북	포항시	포항시체육회장보궐선거	08. 14(수)
24	조합장	전북	김제시	김제시산림조합장보궐선거	08. 14(수)
25	조합장	충남	천안시동남구	천안축산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08. 23(금)
26	조합장	전남	장성군	삼계농협조합장보궐선거	09. 04(수)
27	조합장	경남	밀양시	동밀양농협조합장선거	09. 11(수)
28	지방체육회장	경북	울진군	울진군체육회장선거	09. 12(목)
29	대학의장	광주	북구	제22대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	09. 25(수)
30	조합장	인천	미추홀구	인천축산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10. 04(금)
31	조합장	경북	포항시남구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10. 11(금)
32	조합장	경북	울진군	남울진농협조합장선거	10. 16(수)
33	지방체육회장	제주	제주시	제주시체육회장보궐선거	11. 07(목)
34	지방체육회장	서울	용산구	용산구체육회장보궐선거	11. 21(목)
35	조합장	전북	순창군	순정축산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11. 27(수)
36	조합장	경북	영덕군	영덕군산림조합장보궐선거	12. 04(수)
37	지방체육회장	경기	광주시	광주시체육회장재선거	12. 12(목)
38	대학의장	인천	계양구	제9대 경인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	12. 12(목)
39	조합장	경기	용인시수지구	수지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12. 13(금)

□ 2023년: 1,376건

연번	구분	시도	구시군	선거명	선거일
1	대학의장	충북	청주시서원구	제22대 충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01. 18(수)
2	지역체육회장	전북	순창군	순창군체육회장재선거	01. 19(목)
3	지역체육회장	인천	동구	인천동구체육회장재선거	02. 09(목)
4	지역체육회장	대구	달성군	달성군체육회장선거	02. 10(금)
5	대학의장	충남	공주시	공주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02. 10(금)
6	수협중앙회장	중앙	중앙	제26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	02. 16(목)
7~1352	동시조합장		전국	협동조합장선거 (1,346건)	03. 08(수)
1353	조합장	전남	담양군	담양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03. 08(수)
1354	대학의장	경북	안동시	제9대 안동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03. 28(화)
1355	조합장	전북	남원시	운봉농업협동조합장재선거	03. 31(금)
1356	조합장	전남	보성군	보성축산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05. 18(목)
1357	조합장	전북	익산시	망성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06. 09(금)
1358	대학의장	서울	서초구	제18대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06. 26(월)
1359	대학의장	서울	노원구	제13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07. 13(목)
1360	대학의장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07. 20(목)
1361	대학의장	경남	창원시의창구	창원대학교 제9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08. 30(수)
1362	지역체육회장	경남	김해시	김해시체육회장보궐선거	09. 15(금)
1363	조합장	강원	양양군	강현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09. 27(수)
1364	조합장	제주	서귀포시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10. 11(수)
1365	지역체육회장	전남	신안군	신안군체육회장보궐선거	10. 30(월)
1366	대학의장	대구	남구	제17대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11. 01(수)
1367	대학의장	대전	유성구	제20대 충남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11. 23(목)
1368	대학의장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12대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11. 28(화)
1369	대학의장	강원	강릉시	제5대 강릉원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11. 29(수)
1370	대학의장	경남	진주시	제9대 진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11. 29(수)
1371	대학의장	충남	공주시	제8대 공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재선거	12. 05(화)
1372	대학의장	충북	청주시서원구	제20대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12. 06(수)
1373	산림중앙회장	중앙	중앙	제22대 산림조합중앙회장선거	12. 06(수)
1374	지역체육회장	전북	장수군	장수군체육회장보궐선거	12. 21(목)
1375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중앙	중앙	새마을금고중앙회장보궐선거	12. 21(목)
1376	조합장	경기	용인시처인구	모현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12. 27(수)

□ 2022년: 265건

연번	구분	시도	구시군	선거명	선거일
1	조합장	경남	통영시	멀치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01. 14(금)
2	조합장	부산	서구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01. 26(수)
3	조합장	전남	완도군	완도군산림조합장보궐선거	01. 27(목)
4	조합장	전남	강진군	강진농업협동조합장재선거	02. 04(금)
5	조합장	경기	남양주시	미금농업협동조합장재선거	02. 06(일)
6	조합장	경북	군위군	군위군산림조합장보궐선거	03. 30(수)
7	조합장	경기	안성시	보개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03. 30(수)
8	조합장	전북	임실군	임실군산림조합장보궐선거	03. 30(수)
9	조합장	강원	강릉시	북강릉농업협동조합장재선거	03. 31(목)
10	조합장	부산	남구	남부산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03. 31(목)
11	대학의장	대전	유성구	한밭대학교 제9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06. 29(수)
12	조합장	전남	신안	신안농협조합장재선거	06. 29(수)
13	조합장	서울	송파	송파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07. 20(수)
14	기타	대전	서구	업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	09. 28(수)
15	대학의장	전남	무안군	목포대학교 제9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09. 29(목)
16	국기원장	중앙	-	국기원장선거	10. 06(목)
17	대학의장	광주	북구	제8대 광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11. 01(화)
18	대학의장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11. 23(수)
19	대학의장	서울	송파구	제8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12. 01(목)
20	대학의장	충북	충주시	제8대 한국교통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12. 05(월)
21	대학의장	전남	순천시	제10대 순천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12. 08(목)
22~ 265	지방체육회장	전국		시도/시군구 체육회장선거 (244건)	12. 15(목) 11건/ 12. 22(목) 233건

[참고자료 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

제10장 벌칙

제57조(적용 제외) ①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 외의 위탁 선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5조, 제66조제2항제12호, 제68조제1항·제2항제2호 및 제4항·제5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공공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제58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제8호·제10호·제12호·제13호, 제67조,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한다.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해당 위탁단체에 가입되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및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3. 위탁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위탁단체의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한 자
6.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선거인의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한 자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35조를 위반한 자(제6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58조 또는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63조(사위등재죄) ①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 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사위투표죄) ①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5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한 자
2.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자
3.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 또는 탈취한 자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의3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당 위탁단체 이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2. 제3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를 밝힌 구성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3. 제30조의3제9항제1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28조에 따른 선거운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4. 제30조의3제9항제2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5. 제30조의3제10항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를 위반하여 후보자등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제25조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자. 다만,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등과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활동보조인은 제외한다.

1의2. 제24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2. 제25조에 따른 선거공보의 종수·수량·면수 또는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26조에 따른 선거벽보의 종수·수량 또는 첩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4. 제27조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5. 제28조에 따른 통화방법 또는 시간대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6. 삭제 <2024. 1. 30.>

7. 제30조에 따른 명함의 규격 또는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7의2.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투표관리관등의 제지명령에 불응한 자

7의3. 제30조의3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한 자

8. 제31조를 위반한 자

9. 제36조를 위반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한 자

10. 제37조를 위반한 자

11. 제38조를 위반한 자

12. 제73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13. 제75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67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그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73조제4항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할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73조제4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③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과권자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4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채납처분 등)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권자는 채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법원예의 통보)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2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